## 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-147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.

> 2024년 5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

## - 다음 -

## 가.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페지

**1. 상** 호 : 홍국생명보험㈜

## 2.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

인가업무 단위	금융투자업의 종류	금융투자상품의 범위	투자자의 유형
1-13-1	투자매매업	집합투자증권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
2-13-1	투자중개업	집합투자증권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

3. 폐지 승인일 : 2024. 4. 30.